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0.04.20.

행정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3월 12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4월 14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10. 4. 15) 상정 의결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 案 說 明 者 : 행 정 구 장 송 요 출)

가. 제안이유

2009년 4월 1일 「지방공기업법」 과 2009년 9월 21일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의 일부개정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」 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임원의 임면 요건 변경 (안 제8조, 제9조)
- 이사회 의장선임 및 운영 규정 보완 신설 (안 제13조)
-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·구성 및 운영 규정 개정 (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)

3.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의 要 旨 (專 門 委 員 이 현 영)
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이 일부 개정됨 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審 査 結 課 : 原 案 可 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61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3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공기업법」 개정('09.10.2 시행) 및 동법 시행령 개정('09.10.2 시행), 지방공기업 설립·운영기준 개정('09.09.28, 행정안전부)에 따른 후속 조치에 따라 공단운영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이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, 이사장은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”하도록 한 규정을 “상임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,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하며 임원의 후보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”하도록 「지방공기업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사의 임면 요건에 관한 규정 변경
- 나.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이사장 이외 임원(이사, 감사)도 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 임명토록 「지방공기업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
- 다. “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경영성과에 따라 1회 연임 할 수 있다”는 규정을 “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”로 「지방공기업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임원의 연임기준 변경
- 라.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(당연직 제외) 호선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 설립·운영 지침이 개정되어 이사회 의장 및 임원의 공단 대표권 제한규정 마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
- (2) 지방공기업 설립·운영 기준(행정안전부, 2009. 9.28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.

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10. 1.28 ~ 2.17,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- (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”을 “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”으로, “경영성과에 따라서 1회 연임할 수 있다.”를 “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며,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3항에 따른 비상임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,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

제9조제3항(종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비상임 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하며,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영등포구의 행정국장,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,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.

제13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, 제4항,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,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.
- ④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.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 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.
-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수당 이외 이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의 제목 “이사장추천위원회”를 “임원추천위원회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영등포구에”를 “공단에”로 한다.

-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“7인”을 “7명”으로, “잔여위원”을 “남은 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4인” 및 “3인”을 각각 “4명” 및 “3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“2인”을 “3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“3인”을 “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각 호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구청장은 이사장의”를 “공단은 임원의”로, “이사장을”을 “임원을”으로, “구의회와 공단의 이사회에”를 “구청장과 구의회에 위원회 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이사장에”를 “임원에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주재한다”를 “주관한다”로 한다.

제2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“각 호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지방공기업법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구청장이”을 “**위원장이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영등포구의 부서장이 된다.”를 “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공단에서 **임원인사**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**담당팀장**이 된다.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이사장”을 “**임원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이사장”을 “**임원**”으로, “2인”을 “**2명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이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”을 “**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“이사장”을 각각 “**임원**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3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각 호의 1에”를 각각 “**각 호의 어느 하나에**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이사장) ①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<u>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</u> 자 중에서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<u>경영성과에 따라서 1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이사장) ① ----- -----<u>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</u> ----- -----, <u>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이사) ①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동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설〉</p> <p>②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비상임이사 중 영등포구의 행정국장,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단,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<u>관련분야 전문가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, 이사장의 유고시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9조(이사) ① <u>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며,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② <u>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,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</u></p> <p>③ <u>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하며,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영등포구의 행정국장,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,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, 이사장의 유고시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이사회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<p>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<p>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</p> <p>제17조(설치) ①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한 이사장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 <p>②위원회는 영등포구에 두되, 비상설위원회로 한다.</p>	<p>제13조 (이사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,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.</p> <p>④의장은 이사회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 다만 이사회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.</p> <p>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 <p>⑥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수당 이외 이사활동에 필요한 실비,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⑦ (현행 제4항과 같음)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장 임원추천위원회</p> <p>제17조(설치)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 <p>② ----- 공단에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하되, 제 3호에서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공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.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.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<p>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예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5. (생략) <p>③<u>구청장은 이사장의</u>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구의회와 공단의 이사회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④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</p> <p>제19조(위원장) ① (생략)</p> <p>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</p>	<p>제18조 (구성) ① ----- ----- 7명 ----- ----- 남은위원 ----- ----- ----- 4명 ----- ----- ----- 3명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.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.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<p>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5. (현행과 같음) <p>③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구청장과 구의회에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</p> <p>제19조(위원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주관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예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0조(위원의 결격사유) -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-----</p> <p>1. 「지방공기업법」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1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영등포구의 부서장이 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21조(회의) ① -----위원장이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공단에서 임원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팀장이 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2조 (이사장 후보의 추천)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②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③위원회는 이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④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사장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사장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2조 (임원 후보의 추천) ① -----</p> <p>----- 임원 -----</p> <p>② ----- 임원 -----</p> <p>----- 2명 -----</p> <p>③ ----- 임원후보추천대상자 -----</p> <p>-----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 임원 -----</p> <p>----- 임원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⑤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모집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</p>	<p>⑤ ----- 임원 ----- -----.</p>
<p>제23조 (사무협조)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제23조 (사무협조) ----- 임원 ----- ----- ----- -----.</p>